

『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』 일부개정 조례안



성 북 구
(복지정책과)

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안

의안 번호	45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22년 11월 일
제 출 자 : 성북구청장

1. 제안이유

성북구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(안 제8조의 5)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규: 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

< 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>

제41조(지역사회보장협의체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의사회보장을 증진하고,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·법인·단체·시설과 연계·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·군·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.

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·자문한다.

1. 시·군·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·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
2. 시·군·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
3. 시·군·구의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
4. 시·군·구의사회보장추진에 관한 사항

5. 읍·면·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

6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다만,제40조 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.<개정 2017. 3. 21.>

- 1.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2. 지역의사회보장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·법인·단체·시설의 대표자
3.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
4. 제7항에 따른 읍·면·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(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에는 민

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을 말한다)

5.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
-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.
- ⑤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·군·구의조례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로 정한다.<개정 2017. 3. 21.>
- ⑦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읍·면·동 단위로 읍·면·동의사회보장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당 읍·면·동에 읍·면·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.<신설 2017. 3. 21.>
- ⑧ 제7항에 따른 읍·면·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시 및 시·군·구의조례로 정한다.<신설 2017. 3. 21.>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도 첨부

다. 합 의: 해당 없음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

- 기간: 2022. 10. 06. ~ 2022. 10. 26. (20일간)
- 방법: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
- 결과: 의견 없음

2) 부패/인권/성별/아동영향평가

- 결과: 원안동의

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5항 중 “업무추진에”를 “업무추진의”로, “필요시 5명 이하의”를 “필요한 경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) ① ~ ④ (생 략) ⑤ 동 협의체는 동 협의체 <u>업무</u> <u>추진에</u> 자문을 위해 <u>필요시 5명</u> <u>이하의</u>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	제8조(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----- <u>업무</u> <u>추진의</u> ----- <u>필요한 경</u> <u>우</u> ----- ---

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
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
비용 발생요인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 제2항 제1호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

3. 미첨부 사유

- 비용 발생 요인이 없으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함

4. 작성자

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장 임정선